

국 민 평 생 직 업 능 력 개 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6. 9.

고 용 노 동 부
(직업능력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 및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직무능력 인정서에도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직무능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경력 정보란에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양성사업에 따른 청년 해외 직장체험”을 “양성사업”으로 한다.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

6.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무능력 인정서

성 명: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의 직무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2. 이 인정서는 0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발급된 것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인정이 취소됩니다.

■ 자 격

연번	취득 방법	자격명(등급) (자격증 번호)	발급 기관	취득 일자 (유효기간)	기타

■ 교 육

연번	교육 유형	교과·과정명	교육 기관	교육 기간	기타

■ 훈 련

연번	훈련 유형	훈련·과정명	훈련 기관	훈련 기간	기타

■ 경 력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연번	사업장 명칭	업종	피보험자격 취득일	피보험자격 상실일	근로·노무제공일수

※ 근로·노무제공일수는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2) 사업자등록 정보

연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업태	사업 종목	개업일	폐업일

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연번	소속	직책	근무 기간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대-중-소-세분류)	능력단위명 (능력단위 코드)

4) 일경험 사업 이수 정보

연번	유형	사업명	경험 직무	참여 기관	참여 기간

5)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 정보

연번	유형	담당 직무	국가	참여 기관	참여 기간

6)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정보

연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구분(코드)	귀속연도	귀속월

■ NCS 취득 내역

연번	국가직무능력표준		취득 구분	취득 방법	명칭	기타
	분류 (대-중-소-세분류)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에 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인터넷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 본 직무능력 인정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확인·발급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